현장실습 협약서

간호학과 현장실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갑" 이라 한다)와 대구대학교(이하 "을" 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간호실습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"갑" 과 "을" 의 협력을 통하여 실습생의 교육에 필요한 기술적인 숙련과 포괄적인 행위를 간호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"갑" 과 "을" 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기간) 협약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(3년)로 한다.

제3조 ("갑" 의 의무와 권리) "갑" 은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집담회실 등을 지원한다.

제4조 ("을" 의 의무와 권리) "을" 은 "갑" 의 제 규정 및 제반사항과 방침을 준수하도록 실습생을 지도한다. 실습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기관내 감염, 사고, 회원 및 기관 정보 유출 등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"을" 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현장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) "을" 은 실습지도를 위하여 "갑" 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현장지도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1) 현장지도자는 간호실무전문가이다.
2) 현장지도자는 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지도하고 평가한다.

제6조 (실습인원 및 기간) 실습인원 및 기간은 "갑" 과 "을"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실습비) "을" 은 "갑" 에 학생 1인당 소정의 실습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, 금액은 "갑" 과 "을" 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 (실습중지 통보) "을" 은 실습생이 무단결석(3일 이상), 또는 제4조 사항 위반 시 "갑" 이 실습 중지를 통보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제9조 (해석)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"갑" 과 "을" 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. 8. 1.

주 소 :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길 33
기 관 명 : 대 구 대 학 교
대 표(장) : 대 구 대 학 교 총 장 (직 인)

주 소 :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길 34, 4층
기 관 명 : 남 구 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
대 표(장) : 남 구 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 장 (직 인)